

## 제13대 총장후보자 선정 선거관리위원회 공고 - 선거운동 금지행위 목록 -

성신여자대학교 제13대 총장후보자 선거 입후보자 공고가 3월 17일 이루어졌으며(관련: 선관위 공고 No. 2026-02), 이때부터 선거일 전일인 5월 11일 24:00까지 입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및 선거인들에게 선거 규정 및 시행세칙에 제시된 선거운동 금지행위의 유형을 알리고, 해당 규정에 적시되지 않은 추가적인 금지행위 목록(붙임자료 참조)을 아울러 공고하오니, 선거운동 시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6년 3월 17일

성신여자대학교 제13대 총장후보자 선정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인)



## [붙임자료: 선거운동 금지행위 관련 규정 및 추가 목록]

### 1. 성신여자대학교 제13대 총장후보자 선거 시 선거운동 금지사항

금 지 항 목	
1	현수막이나 확성기를 사용한 선거운동 행위
2	선거권자가 아닌 자를 동원하는 선거운동 및 홍보 행위(예: 홍보동영상 포함)
3	이메일이나 SNS 홍보 메시지 발송 시, 입후보자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리로 보내는 행위
4	이메일이나 SNS 홍보 메시지 발송 시, 선거운동 기간 동안 총 <b>7회</b> 를 초과하는 행위
5	이메일이나 SNS 홍보 메시지 발송 시, <b>1일 1회</b> 전송을 초과하는 행위
6	수업 시간 중에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하는 것

### 2. 선거운동 금지행위 관련 선거 규정 및 시행세칙

#### <총장후보자 선정 및 선거관리 규정>

제14조 (선거운동 기간 및 금지행위) ① 선거운동 기간은 제9조 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입후보자를 공고한 때로부터 선거일(제18조 제4항에 따른 결선투표가 있는 경우에는 결선투표일을 말한다) 전일 24:00까지로 한다.

② 누구든지 선거에서 입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입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입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전·물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 또는 직위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2. 금전·물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 또는 직위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을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3. 금전·물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 또는 직위를 제공을 요구 내지 알선하는 행위
4. 입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강요 내지 협박하거나, 1호 내지 3호에 정한 행위를 하는 행위
5. 연설·벽보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입후보자에 대한 거짓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6.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입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단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

익에 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그 밖에 공정한 선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별도로 판단하는 행위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입후보자 또는 선거인에 대해서 경고, 시정명령, 선거인 자격제한, 입후보자 등록취소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선거운동 방법, 금지행위 및 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3대 총장후보자 선정 및 선거관리 시행세칙>**

제8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강요, 협박 또는 폭행하는 행위
2.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하거나 허용한 벽보 등을 훼손하는 행위
3. 공개합동토론회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는 행위
4. 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선거와 관련된 벽보 등을 게시하는 행위
5. 입후보자 이외에 선거권을 가지지 않은 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6. 선거인명부 작성을 방해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인명부 작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
7. 규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한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9조 (위반행위의 신고) ① 누구든지 입후보자 또는 선거인이 제8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를 하는 자는 신고시에 관련 문서, 사진, 녹화영상 등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위반 시 조치) 선거관리위원회는 제9조의 신고가 이유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후보자 또는 선거인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경미한 위반행위인 경우 1회 위반 시 경고, 2회 위반 시 시정명령, 3회 위반 시 입후보자 등록취소 또는 선거인 자격박탈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공정한 선거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 위반 시 입후보자 등록취소 또는 선거인 자격박탈 조치를 할 수 있다.